

대한민국

2013. 2. 15. 월본영수

20 판결송달

91

제 2 부

판 결

사건 2012다108351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임그루

경북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피고, 피상고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재나4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5.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신영철



대법관

김소영

김소영



정본입니다.

2013. 2. 16.

대법원

법원사무관 성기웅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